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플랫폼가맹사업자 가맹수수료 수취 제한 〉

〈 가맹수수료 조정 개선명령 권한 도입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86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128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플랫폼가맹사업자 가맹수수료 수취 제한(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3
2. 가맹수수료 조정 개선명령 권한 도입(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9
※ 참고자료	13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1128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4.
3. 회 부 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플랫폼가맹사업자 가맹수수료 수취 제한(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 여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가맹점이 여객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¹⁾,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종류로 구분됨²⁾.

이 중 플랫폼가맹사업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하며,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운송가맹점 가입 가능³⁾)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즉, 택시운송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소속 운송가맹점의 택시(이하 “가맹택시”)에게 여객을 배정하여 운송서비스 또는 운송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형태의 사업임.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

세부 업종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 운송 (과거 타다·우버를 제도화한 유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택시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유상 운송 (카카오T블루 등)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중개하는 중개서비스만 제공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은 여객의 콜을 택시기사가 수락하는 경우 배차되는 방식이지만, 현재 다수의 가맹택시가 속한 플랫폼가맹사업의 사업모델은 여객의 콜이 가맹택시 1대에 강제 배차되는 방식임⁴⁾.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영업표지(상호, 상표 등 포함)를 사용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브랜드화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함. 그리고,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플랫폼 이용료,

4) 현재 전국 가맹택시(9.1만대)의 80% 이상이 강제 배차 방식의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차량관제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가맹금⁵⁾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를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함.

2025년 7월 기준, 전국에 1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체가 있으며 이 중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9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속한 가맹택시는 76,178대로서 전국 가맹택시 총 91,543대의 83.2%를 차지하고 있음.

가맹수수료는 플랫폼가맹사업체마다 정하는 기준은 다르나, 대부분의 업체(16개 업체 중 14개 업체)에서 운임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고,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가맹사업체(9개 업체)의 가맹수수료 수준은 운임 수입의 2.8%(일부 3.3%) 수준임. (참고1. 참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작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운임 수입과 관련하여, 가맹택시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을 배정받아 영업하는 ‘가맹영업’ 외에도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 운송플랫폼(타사의 호출앱)을 통해 여객을 배정받아 운송하는 ‘중개영업’ 또는 운송플랫폼 이용 없이 운행·대기 중 여객을 태우는 종전의 ‘배회영업’을 모두 할 수 있는데, 현재 카카오T 플랫폼 이용 플랫폼가맹사업자(9개 업체, 가맹택시 약 7.6만대)들은 가맹택시가 가맹영업으로 얻은 운임 수입뿐 아니라, 중개영업이나 배회영업으로 얻은 운임도 포함한 모든 운임 수입에 일괄하여 가맹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가맹택시의 타사 호출앱을 이용한 중개영업이나 배회영업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징수한 행위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⁶⁾를 위반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운송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2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⁷⁾하였음. (참고2. 참조)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대구·경북DGT모빌리티 2.3억원('25.1), 전국KM솔루션 38.8억원('25.5)

이에 개정안은 가맹택시가 가맹영업 외의 다른 경로로 얻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례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 증가하게 되어(호출앱을 끄고 다님) 호출승객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승차거부 등의 발생으로 승객의 편의가 저하될 것이라는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의견⁸⁾이 있다는 점과 현재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경과를 보아가며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카카오T 신규 가맹수수료 ‘2.8%’… 길거리 승객 태워도 똑같이 부과’(‘23.12.15 문화일보), ‘승객도, 택시도, 카카오도 좋아야…최우선은 승객 편의’(‘23.11.13 이데일리)

2. 가맹수수료 조정 개선명령 권한 도입(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운송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5. (생략)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게 받거나 요구하는 가맹수수료 등의 조정</u> 4.·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각각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가지며⁹⁾,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가맹사업법」 상 양자 간의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운송가맹점)가 가맹본부(플랫폼가맹사업자)에 지급하는 가맹금¹⁰⁾에 해당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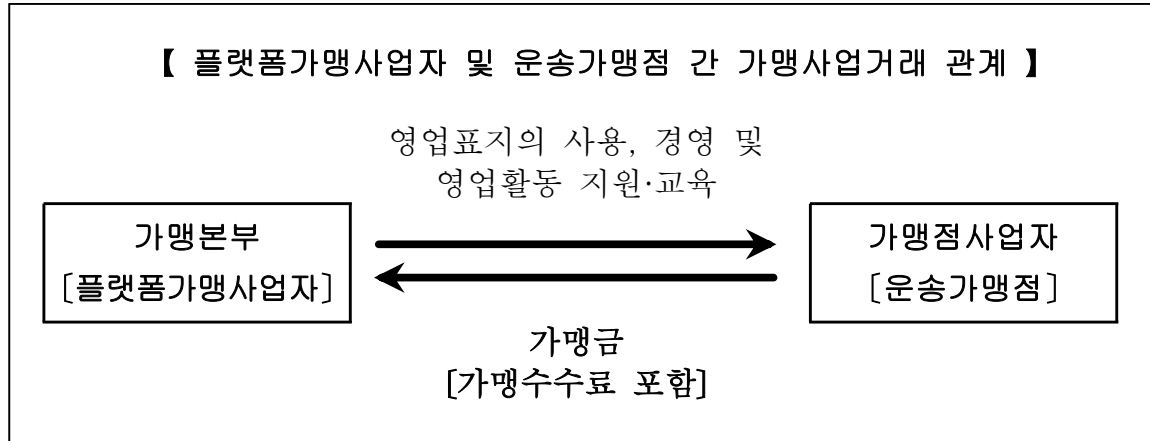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작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개정안은 이러한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¹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관련 부당한 계약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상대적 약자인 운송가맹점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맹계약,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예치 및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등 가맹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¹²⁾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참고3. 참조)

따라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정책은 기본적으로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가맹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선조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2. 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 1

플랫폼가맹사업 현황('25. 7. 기준)

□ 플랫폼가맹업(16개社, 9.1만대): 택시 기반 브랜드화된 서비스 제공

① ~ ⑨ : 카카오T 플랫폼 이용 가맹사업자

사업자	① KM 솔루션	② DGT 모빌리티	③ SMC 모빌리티	④ 블랙핀	⑤ BTX 모빌리티	⑥ 에세텔	⑦ DH 모빌리티	⑧ GT 모빌리티
브랜드	T블루/네모/세큐T		캡시	마이캡	헤이나우택시	택시타요	헤이웨이	나이스캡
면허 일자	'19.3.20	'20.9.28	'25.2.24	'25.2.24	'25.2.24	'25.2.24	'25.2.24	'25.4.17
서비스 지역	전국 (대구·경북 제외) -72개사업구 역	대구·경북 -12개 사업구역	서울·경기 -19개 사업구역	서울·인천· 경기(시흥) -3개 사업구역	부산·경남 -2개 사업구역	부산·세종 -2개 사업구역	경기·강원· 충북·충남· 전북·울산· 세종 -17개 사업구역	광주, 전남
가맹 수수료	운임수입 3.3% / 2.8%		운임수입 2.8%	운임수입 2.8%	운임수입 2.8%	운임수입 2.8%	운임수입 2.8%	운임수입 2.8%

사업자	⑨ 코나투스	⑩ 우티	⑪ 안모빌리티	⑫ VCNC	⑬ 진모빌리티	⑭ 코엑터스	⑮ 코나아이	⑯ 아이나비
브랜드	반반택시 투루택시 (카카오)	우버 택시	나비콜	타다 라이트	i.M택시	고요한 택시	행복동맹 가맹택시	아이나비M
면허 일자	'20.9.28 ('25.4.15, 변경인가)	'21.8.18	'20.8.31	'20.9.28	'23.6.12	'24.3.29	'24.12.10	'25.6.23
서비스 지역	경기(부천) 경북(영천) 경기·강원 -18개 사업구역	서울·대구· 부산·울산 등 32개 사업구역	서울·대구	서울·부산	서울 경기(부천)	경기·세종	천안·부산	성남·순천
가맹 수수료	- 운임수입 2.8%	운임수입 2.5%	호출건당 300원	운임수입 4%	운임수입 5~7%	운임수입 2.5%	월관리비 2만	운임수입 2.5%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2

운송가맹점 가맹수수료 관련 공정위 처분 내용

1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1.15)

※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보도자료 <붙임> 내용임

<붙임> (주)디지털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세부내용

I. 법 위반 내용

1. 행위사실

- (주)디지털모빌리티(이하 ‘디지털’)는 2019. 11. 9.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기사로부터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매월 계속가맹금으로 지급 받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속가맹금 내역 : ①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②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③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④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서 중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 >

제13조(계속가맹금 등 비용)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월 납부할 비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은 1대 당 금액,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본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 합계의 20%	매월 15일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본부		매월 15일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가맹본부		매월 15일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가맹본부		매월 15일
전용단말기 월사용료(모뎀 통신비)	협의	협의	협의
관리비	가맹본부	법인: 대당 33,000원 개인: 대당 48,000원	매월 15일

〈 계속가맹금 수취 내역의 의미〉

구 분	의 미
①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카카오 및 카카오T 상표를 사용한 대가
②가맹점 차량관리(관계)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택시 차량의 운행정보가 담긴 프로그램 이용 대가
③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카카오T 앱 플랫폼의 배차(호출) 서비스 이용 대가
④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앱과 미터기를 연동하는 블루미터와 데이터 이동을 위한 모뎀 사용료

- 디지털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기사는 카카오T 앱이 아닌 배회영업이나 다른 호출앱을 통해 운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카오 T 앱을 이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디지털에 납부해야 한다.
- 이는 가맹기사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위법성 판단

- 디지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 디지털은 대구지역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3.10월 기준)의 가맹본부로서 가맹택시 기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 － 가맹기사들은 디지털에 영업활동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계약 해지·전환 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지속적 거래 관계에 종속될 개연성이 크다.
- 디지털의 행위는 가맹기사가 카카오T 앱의 호출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한 행위로,
 - － 타 가맹본부 대부분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II. 조치 내용

- 공정위는 디지털이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을 즉시 중지한 뒤 가맹기사와 협의하여 가맹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2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징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5.28)

※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케이엠솔루션(이하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주)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사용료(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하여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불임 참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하여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참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 규제 관련 주요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

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